



2020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



나는 가장이다

대출 내용

- **대출금액**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(단, 신용 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- **대출금리**: 무이자
- **대출용도**: 임차보증금
- **대출조건**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

예시

- ①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⇒ 대출 가능금액 : 250만원)
- ②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⇒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 / 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- ③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향된 경우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⇒ 대출 가능금액 : 150만원)

- **상환방법 및 금액**: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

- ▶ 3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5만원 분할 상환
- ▶ 300만원 초과 ~ 35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6만원 분할 상환
- ▶ 350만원 초과 ~ 4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7만원 분할 상환
- ▶ 400만원 초과 ~ 45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8만원 분할 상환
- ▶ 45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9만원 분할 상환

※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
신청 대상

-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 - ① 만 18세 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 -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
 - 수도권 9,000만원
 - 광역시 7,000만원
 - 그 밖의 지역 6,000만원
 ※ 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

〈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
(단위 : 원)

가구원 수	소득 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
2인	2,992,000	100,050	85,837	100,076
3인	3,871,000	129,124	121,735	131,392
4인	4,749,000	160,546	160,865	160,883

※ 가구원수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만 18세 이하: 2002. 1. 1. 이후 출생자 (취학자녀: 1998. 1. 1. 이후 출생자)
※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
대출 불가 세대

-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 -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 -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 - ③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 -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- ⑥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)

*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구분		2020년 일정		
		1차	2차	3차
대출 조건	신규/재계약 기한	2019년 11월 21일 ~ 2020년 5월 31일	2020년 4월 1일 ~ 8월 31일	2020년 7월 1일 ~ 11월 30일
	잔금지급일	2019년 11월 21일 ~ 2020년 6월 30일	2020년 4월 1일 ~ 9월 30일	2020년 7월 1일 ~ 12월 31일
신청서류 접수		3월 23일(월) ~ 4월 10일(금)	6월 8일(월) ~ 6월 24일(수)	9월 4일(금) ~ 9월 23일(수)
최종심사대상자 발표		4월 27일(월)	7월 17일(금)	10월 20일(화)
약정서류 접수		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(※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,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)		
대출금 입금		5월중	8월중	11월중

※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공지)

- **접수방법**: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- 신청서 및 구비서류(원본) 일체를 첨부하여, 우편제출
- **접수처**: (08302)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,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**제출서류**

구분	구비서류		비 고
필수 서류	신청 기관	• 서식1. 신청기관 총괄표(엑셀)	홈페이지 다운로드
		• 서식2. 신청기관 신청서(한글)	
		• 서식4. 사실확인서 (해당인 경우)	
	신청자	• 서식3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		주민센터, 인터넷	
•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각 1부 - 시설거주자: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- 무상거주: 서식4.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-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: 신·구 계약서 사본 각 1부			
소득증빙서류 (해당분야 제출)		기준 중위소득 50%이하	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
	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52%이하	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
	기준 중위소득 52%초과 ~ 100%이하	• (2020년)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	국민건강보험공단
해당자 신청자	★ 심사평가시 가점부여	• 장애인증명서 1부	주민센터, 인터넷
	신용회복 대상자	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	신용회복위원회

※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- **유의사항**
 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 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(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)

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맞춤형 사업팀 T. 02-861-3011

- *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